

HACCP으로 닭고기 안전성 확보

# 축산물 위생관리 현황과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 I.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는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왔으며 현재는 가축사육 단계에서부터 식육판매점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담하고 있다.

1998년 6월 이전에는 도축단계까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담하고 나머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일관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법령·제도 및 예산을 수립하여 운용하며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및 유해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 등 집행업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가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별 업무분담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단)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하위법령 운용,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예방적 위해관리 제도(HACCP),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및 친환경 축산 육성제도 등 운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출입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축산물 안전성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
- 시·도 및 소속 위생감사기관 : 국산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 도축검사,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감시 등 수행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물등급판정소 등 : HACCP 심사, 도축검사, 등급판정 및 이력제 등 시행

## II. 그간의 위생관리 주요내용 및 성과

### 1. 축산농가 HACCP 적용 등 안전 축산물 생산여건 확충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한 위해

〈표 1〉 축산식품에 대한 관리체계

업무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통 (보관/운반 등)	소비 (식당, 백화점 등) (식육판매점 제외)
	사육	수입	국내가공	수입		
기준설정	농림수산식품부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식약청이 농식품부와 협의 후 설정)					식약청
제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지도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지자체

요소 예방프로그램(HACCP)을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완성

- 1998. 7월 도축장·가공장에 시범 도입한 이후, 2008. 3월 닭농장에 HACCP이 도입됨으로써 'Farm-to-Table HACCP'이 완성됨.
- 2008. 12월말 기준, HACCP 적용업소·농장은 1,528개소로서 국내 축산물 생산·유통량의 약 60%에 해당
- 도축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소비자단체에 의뢰) 및 도축장 실명제 도입(2008. 12) 등 추진
  -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2008. 12월), 열악한 도축장 퇴출유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에 대한 직불제 도입(2009. 1 시행)
  - 한우·젓소·돼지·닭 등 4개 축종 대상 2009년 예산 10억원
-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 개정(2008. 12) 등을 통해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10년간 1조5천억원 투자)도 병행
- 축산물 위생처리, HACCP운용, 잔류방지요령 등 위생교육(1만3천명)

## 2.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 유해 잔류물질(12만건) 및 미생물(12만건)

등 축산물 검사

## 3. AI 조기 종식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2008. 4. 1~5. 12(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33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종료
- 2008. 6. 29일 이동제한 해제 후 2008. 8. 15일 청정국 선언
- AI 재발 방지대책 시행(2008. 7)으로 AI 상시방역체계 구축

## III.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 1. 사육단계 안전관리

- 가.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 추진
-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감축 : 25종(2008) → 18종(2009) → 9종(2011)/항생제 금지
  - 항생제 등 잔류 위반농가 규제(6개월 출하제한, 출하시 정밀검사) 및 지도
  -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 마련(2009. 6)
  -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2,700건/년)을 통한 저감대책 효과 검증

나. 사료의 위생·안전성 관리

-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 공장에

HACCP으로 닭고기 안전성 확보

# 축산물 위생관리 현황과 대책

HACCP 적용(2008, 94개 중 76개소 81%)

- 동물성 단백질 사용여부 및 유해물질 검색을 위한 국내유통 사료 수거검사 등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

다. 사육부터 판매까지 예방적 안전관리제도 (HACCP) 적용 확대

- 2012년까지 국내 생산·유통 축산물의 80% 이상에 HACCP 적용 추진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심사 인력 확충(현 68명→2012년 120명) 및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 여건 조성
  - ※ 현황(2008. 12. 31 기준) : 농장(380) · 도축장(145) 등 1,528개소/총 물량의 60% 수준

- HACCP 적용 농장·가공장 등에 인센티브 부여
  - 군납·집단급식소의 HACCP 축산물 사용 촉진(학교급식은 2007년 의무화)
  - 축사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사업 지원시 HACCP 적용농장 우대

라. 가축질병 예방과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밀집 사육 방지 유도

-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10년간 1조5천억원)
  - HACCP 지정을 받았거나, 축사표준설

계도를 활용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

-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 밀집사육에 따른 폐해 방지 유도

## 2. 도축·가공단계 안전관리

가.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등 검사프로그램 개선

- 위해도·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사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해 잔류물질·미생물에 대한 위해평가·관리지침 제정(2009. 6)
  - 신종 또는 위해성이 높은 유해물질·미생물 검색기능 강화(2009년 : 항생제 30종 등 유해 잔류물질 104종, 식중독균 10종 검사)
- 식육 중 사용금지 약품 잔류여부 탐색조사(2009년 잔류물질 18종, 1,770건)

나. 도축장 등 도축·가공업체 안전관리

- 소비자단체 주관 HACCP 운용 평가(매년 실시) 등 도축장 위생 관리 강화
  - 1차(2~3월) : 시·도 자체점검 → 2차(4~10월) : HACCP 운용수준평가 → 3차(10~11월) : 시·도 자체점검 및 행정처분 등 3단계 점검 실시
  - 지육(도체)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

## 축산물 위생관리 현황과 대책

장 내 부분육 경매·가공시설 설치 :  
(2008)30% → (2012)90%

- 도축장·가공시설에 HACCP·위생 시설 개선 자금 지원(2009년 600억원)

다. 도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

- 도축검사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2009~2010) 및 시·도 검사관에 대한 의무교육 추진(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2009. 12)

### 3. 유통단계(수입포함) 안전관리

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 : 취약시기 기획단속, 불량축산물 신고 업체 집중단속 등
- 불량 축산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확대 : 2008년 8,500건 → 2009년 10,000건
-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해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육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온유통체계(콜드 체인) 강화
- 일본 등 선진국과 Codex기준,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금육의 유통온도 기준을 강화(2008.8)하여 권장적용 중(2011. 7월 의무적용)

※ 유통온도 기준 강화 : (현행) -2℃ ~ 10℃ → (강화) -2℃ ~ 5℃

나. 식육에 대한 도축장 실명제, 포장유통 초기 정착

-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도축장 실명제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 실시(2009. 6. 21일까지는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점검)
- 2010년까지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전면 의무화
  - ※ 8만수 이상 도계장(2007. 6) → 5만수 (2008. 6) → 모든 도계·가공장 및 식육판매점(2010)

### 4. 위해정보 공개 강화

가.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영업자명, 영업장소, 위반 및 조치내역) 공개 확대

- 현행 법령에서는 위해 축산물 발생시에만 영업자가 회수대상 제품명, 회수사유, 영업자 내역 등을 공개토록 규정

나. 위해 축산물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요령 마련

- 국내·외 발생 위해에 대한 과학적 정보 및 위해 방지요령 등 상시 제공 